



## 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('22.1.28.) 관련 안내(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)

1. 관련: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-272(2022.1.28.), 516(2022.2.28.)
2.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·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「항공보안법」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('22.1.28.)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,
3. 특히,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므로, 동 사항이 소속 학생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법령	주요내용
항공보안법, 시행령, 시행규칙 (국토교통부)	<b>?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(학생증 관련)</b> - 19세 미만 승객: 학생증 가능 (단, 성명과 생년월 기재시가능 ?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재학증명서, 청소년증 등 필요) - 19세 이상 승객: 학생증 불가능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필요)

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

# 교육부장



국립대학교, 국립대학법인, 국립교육대학교, 사립대학교, 각종대학

주무관

임정화

행정사무관

나대일

대학사제도  
과장

전결 2022.3.4.

김태경

협조자

시행 대학사제도과-2395 ((2022.3.4.)) 접수 학생지원과-2219 (2022.3.7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/ [www.moe.go.kr](http://www.moe.go.kr)  
교육부

전화 044-203-6616 전송 044-203-6485 / [ljh@moe.go.kr](mailto:ljh@moe.go.kr) / 공개